물품구매 기본 계약서

에스케이텔레시스주식회사(이하 “고객사”라 함)와 ok plaza를 통해 주문한 업체(이하 “공급사라 함)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조 (거래의 목적)**

본 계약은 Cyber Shopping Mall 인 okplaza(www.okplaza.kr)를 이용하여“고객사”가 “공급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공급사”는 이를 ”고객사”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1. 본 기본계약은 “고객사”와 “공급사”간의 물품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본 계약과 개별계약과의 모순 발생시 본 기본 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개별계약은 “고객사”의 주문서 또는 온라인 주문으로 “개별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3. 고객사와 공급사 사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본계약서 외 내용을 정한 계약(이하 “특별계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기본계약”과 “특별계약”의 모순 발생시 “특별계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계약 물품)**

“계약물품”은 별첨에 명시한 “계약물품”에 따르며 “계약물품”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 와 “공급사”는 사전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발주서” 또는 기타 형태로 “계약물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공급 단가 결정)**

1. “공급사”가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계약물품” 및 공급단가는 okplaza에 등록되어진 단가로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물품”의 추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쌍방이 공급단가를 합의/결정하며, 최종 단가결정 및 물품 등록에 대한 별도계약은 okplaza의 등록 및 등록단가로 대신한다.

**제 5 조 (공급단가의 변경)**

1. okplaza에 등록되어진 물품별 공급단가는 본 계약체결 후 1년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1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불안 등 공급단가의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공급단가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공급사”의 “계약물품” 공급 거부 시 “고객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발주 및 수주)**

1. “고객사”는 납기예정일로부터 적어도 24시간 전에 “공급사”에게 “계약물품”에 대한 발주를 “okplaza”상의 발주서(이하 “발주서”라 함)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발주 시 “계약물품” 의 품명, 수량, 규격, 인도일, 인도장소, 납기일, 인수 책임자, 기타 필요 사항을 “okplaza”에 등록하여 발주한다.

3. “고객사”가 이미 발송한 “발주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문서 발송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공급사”에게 변경통지를 하여야 한다. “발주서”에 기재된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4. “공급사”가 “고객사”로부터 발주서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주문의 거절, 변경 또는 그 외의 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객사”의 주문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 7 조 (납품 및 생산공정관리)**

1. “공급사”는 공정 및 납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okplaza”에 공정 진행등록 및 생산완료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사”는 “고객사”가 발주 시 지정한 납기일 내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통지 하며, 그에 따른 납기 조정은 “공급사”와 “고객사”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 확정한다

3. “계약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고객사”와 “공급사”는 서면 합의하에 납기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납기 조정이 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공급사”의 납기지체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4. “계약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급이 지연되어 납품 기일의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따른 공정차질로 인하여 “고객사”에게 발생하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 등 일체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품질관리 및 확인)**

1. “계약물품”의 품질은 “okplaza 운영규칙”의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물품” 중 “고객사”가 정하는 별도(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국가인증기간, 고객사 지정시험기관 또는 회사 등)의 사전 인증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사전 인증을 득한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필요 시 공급물품의 제작과정 및 완성품의 납품 전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사”는 “고객사”의 품질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고객사”는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물품의 하자 또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사”에게 재 작업이나 재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사”는 “고객사” 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이러한 사유로 인한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공급사”에게 있다.

4. “공급사”는 “품질관리기준” 에 의거 불합격된 “계약물품” 에 대해서는 반품 하여야 하며, 반품한 물품의 가액과 반환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사”는 반품한 물품의 가액 및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공급사”에게 지급할 대금과 대등 액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품질검사 방법)**

품질관리 주기, 방법,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okplaza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10 조 (물품의 운송 및 상.하차)**

1. “공급사”는 물품출고 전 “계약물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한 이후 출고하여야 한다.

2. “공급사”는 “고객사”가 발주서에서 지정한 운송방법에 따라 상/하자 및 운송을 하여야 하며 운송방법에 대한 쌍방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조정 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물품의 인도)**

1. “공급사”는 “고객사”가 사전 지정한 운송방법에 따라 “고객사”가 사전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 “공급사”는 “계약물품”의 인도 시 “고객사”가 지정한 하차 지의 시공사 현장 관리감독자 또는 사전 지정한 대리인의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인수증 원본을 지체 없이 “고객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위/수탁 물품)**

1. “고객사”는 “계약물품”의 납기 및 운송효율을 고려하여 “공급사”와의 사전 합의하에 “계약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전 인수하여 “고객사”의 점유 하에 관리하며, 이러한 “계약물품”을 “위/수탁 물품” 이라 한다.

2. 제 12조 1항의 경우 “고객사”는 “공급사”에게 “okplaza”를 통하여 입고 요청을 하고, “공급사”는 입고예정일 통보 후 “위/수탁물품”을 “고객사”에게 입고한다.

3. “고객사”는 “위/수탁물품”의 입/출고 시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그 처리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다.

4. “위/수탁물품”의 대금청구는 “위/수탁 물품”이 “고객사”의 물류센터에서 출고 완료되어 최종 고객사가 해당물품을 인수하여 이상이 없을 때 “공급사”는 “고객사”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금청구 대상기간 및 대금 지급방법은 제15조에 따른다.

5. “위/수탁물품”의 사용처에서의 공법변경 또는 기타 시장수요의 급감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수탁물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사”는 해당물품을 “고객사”의 비용으로 “공급사”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사”는 “고객사” 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1. “공급사”는 발주서에서 정한 납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0.15%의 지체상금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사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2. “고객사”는 “공급사”가 납부할 지체상금을 “공급사”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납기 지연이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인력문제, 노사문제 제외) 또는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공급사”는 이행지체책임을 면한다. 단, “공급사”는 계약/발주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의 발생 및 진행사항을 “고객사”에게 즉시 서면 통보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 14 조 하자보증 및 A/S**

1. “계약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완료 후 1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물품”에 별도의 하자보증 담보물(보증보험증권 등)청구 필요 시 하자보증 담보물 내용에 준한다.

2.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물품”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사”는 A/S 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공급사”는 “고객사”가 요청한 기일 내에 “공급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A/S 또는 신품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1. “공급사”는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고객사”에게 공급하여 품질검사에 통과한 “계약물품”에 대한 공급금액을 당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사”에게 청구한다.

2. “고객사”는 “공급사”의 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90일 만기 전자어음으로 지급한다. 다만, "고객사"의 자금상황에 따라 적정한 기한 내에서 지급기일 및 지급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사”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할 수 없다.

**제 17 조 변경사항의 사전통지**

“공급사”는 사업장의 상호, 주소, 업태 등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 및 결제계좌 변경 등 영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고객사” 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경내용을 “okplaza”를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1. “공급사”는 “계약물품”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 권 및 실용신안 권이나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공급사”가 납품한 “계약물품”에 관하여 “고객사” 또는 “공급사”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하며, 만일 위 분쟁으로 “고객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사”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제반 경비 및 신용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고객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고객사” 또는 “공급사”에게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사전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2. 제 8조 제 1항에 따른 SK텔레콤 품질보증센타의 사전 인증을 득하지 아니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계약위반

3. “okplaza 운영기준”의 품질관리기준에 의한 품질불합격 시

4. 계약위반으로 “고객사” 오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경우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7. 휴업, 폐업 또는 전업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 또는 발주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 20 조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발주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상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 즉시 상대방의 입은 직적 손해, 특별손해 등 모든 손해를 전액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상계**

1. “고객사”는 “공급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또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기타의 모든 채무를 “고객사”가 “공급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또는 기타 채무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사”가 “고객사”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이 채권의 당초의 변제기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시가 즉시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고객사”는 이 채권과 “고객사”가 “공급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경우, 제2항의 계약종료시가 아니더라도 “공급사”의 채권자로부터 “고객사”가 “공급사”에게 지급할 채무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집행된 경우에는 집행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계한 후 서면으로 상계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 22 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제 23 조 거래정보의 제공**

계약 당사자는 “okplaza”를 통한 거래내역을 통신 건설공사의 관련 회사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성립일로부터 1년간이며, 계약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25 조 계약의 보충과 해석**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고객사” 와“공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에 부속된 첨부서류 및 발주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6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7 조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의 성립은 okplaza의 업체 등록시 사용자의 동의(수락) 시점부터 성립된다.